

협동조합 도약 지원사업 사업관리기준 가이드라인

제정 2026. 04. 20.

I 협약 및 사업 수행

1. 협약 체결

- 협동조합 도약 지원사업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평가위원회의 위원 자격과 구성, 운영 방법 등은 진흥원 내규 제02-107호 「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 협동조합 생애주기별 지원사업인 도약, 고도화 지원사업은 사업의 연속성 확보와 효과성 제고를 위해 **동일한 위원회로 운영한다.**

- 지원대상 협동조합의 선정 및 지원 규모 결정
- 지원대상 협동조합의 지원 중단 및 제재 심의 및 제재 등급 의결
- 지원대상 협동조합의 이의신청 검토
- 사업 성과 평가
- 기타 지원대상 선정 및 운영상 중요사항과 관련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진흥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 진흥원은 도약 거점기관(이하 '거점기관')이 작성한 수행계획서 등을 검토 후 보완이 필요하면 수정을 요구하고, 추가 보완이 없을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진흥원은 협약 체결 전, 유사 사업 중복지원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중복 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진흥원은 선정조합의 중도 포기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여 **예비 순위**를 정할 수 있다.
- 진흥원은 선정조합과의 **최초 협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협약 해지가 발생하거나 선정조합이 중도 포기하는 경우, 예비 순위**에 따라 추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예비 순위는 1배수 이내로 선정할 수 있다.

2. 선정 취소

- 진흥원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선정 조합의 선정을 취소한다.
 - 협약 전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선정조합이 채무불이행 및 부도, 폐업 등 경영 악화로 사업 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 선정조합이 자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선정조합이 허위로 참여신청서 등을 작성한 경우

3. 사업 수행

- 거점기관은 협약 체결 후 수행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선정조합은 수행계획에 따라 성실히 사업에 참여한다.
 - 예상하지 못한 사정 등으로 수행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진흥원의 신고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진흥원은 시기를 정하여 성과 달성률, 예산 집행률 등과 관련하여 중간 점검을 할 수 있다.
 - 진흥원은 중간 점검 외에도 추가 사업 점검을 위하여 사업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선정조합 등에 요청할 수 있다.
- 거점기관은 협약 기간 종료일 전까지 사업 결과보고서 작성 및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사전 진단보고서, 경영지원 수행 일지 등
- 선정조합은 향후 진흥원이 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이력 성과조사, 이용자 만족도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사업 변경

- 거점기관은 협약 기간 내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진흥원에 **사업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선정조합의 중도 포기 등으로 사업비 집행에 변동이 있는 경우
 - 정책의 변화 등에 의하여 사업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계획이나 공정대로 사업 수행이 어려운 경우
 -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
- 거점기관은 수행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선정조합과 사전 협의한 후** 진흥원에 **변경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 변경 승인요청 시, 수행계획 변경 승인요청 공문 및 관련 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거점기관과 선정조합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 거점기관의 수행계획 변경 신청 내용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진흥원에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 수행계획서 내 사업예산을 조정하는 경우
 - 사업예산 조정이 없이 참여 인력 및 진행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 기타 진흥원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전 협의 필요)
- 거점기관의 **수행계획 변경 신청 내용이 중요하여**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서면심사 가능)

※ 예시

- ① 수행계획서상의 주요 성과지표가 변경하는 경우
- ② 총사업비에 변동이 있는 경우
- ③ 기타 진흥원이 평가위원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진흥원은 협약의 목적상 필요하거나 정책의 변화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사업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과업을 선정조합과 거점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5. 협약 해지

- 진흥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선정조합과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진흥원과 선정조합 간 협약 해지 등을 합의한 경우
 -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부정수급 관련 제재를 받은 경우
 - 유사 사업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보조사업 및 지원사업 등과 중복지원이 확인된 경우
 - 선정조합이 사업 참여 신청 및 수행 과정에서 관련 법률, 협약, 본 사업관리기준 가이드라인 등을 위반한 경우
 - 진흥원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원활한 사업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사업 완료 시까지 과업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등
 - 선정조합이 사업을 중도 포기한 경우
 - 선정조합이 지정된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진흥원은 협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하면 소관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선정조합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진흥원은 선정조합의 귀책 사유로 협약이 해지된 경우, 거점기관에 기지급된 선정조합의 부담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6. 기타 사항

- 사업 수행 중에 활용되는 모든 관계 서류와 자료들은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해당 사업으로 취득한 자료, 문헌, 지식재산권 등 유·무형적 결과물은 선정조합의 소유이나, 진흥원이 해당 결과물에 대한 점검 요청 시, 선정조합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선정조합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진흥원은 대표자 변경사항과 함께 새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총괄책임자가 인사 발령, 퇴직 등의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정조합은 신임 총괄책임자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사전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 해당 사업의 내용은 공공의 목적으로 공개될 수 있다.

II 사업비 관리

- 사업비는 진흥원 지원금(90%)과 선정조합의 자부담금(10%)으로 구성한다.
 - 선정조합의 자부담금은 '현금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현금 전액(100%)은 협약 체결 후 지정 기한 내 본 사업의 별도 전용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 사업비는 다른 사업의 보조금이나 사업비와 구분하여 별도 전용계좌(통장)로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타 사업과 혼용 금지)
- 거점기관은 선정조합의 사전 진단 결과와 사업비 규모를 토대로 [참고] 자문위원 등급 기준을 고려하여 수행계획서상 사업비를 산출해야 한다.
- 거점기관은 선정조합별로 산출한 수행계획서에 따라 사업비를 사용해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다.
 - 다만 거점기관이 소요 예산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흥원에 '수행계획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한다.
- 코칭, 자문 등 수당으로 지급된 증빙자료는 작성·관리해야 하며, 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시,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증빙자료는 경영지원 수행일지 및 수당 지급명세서, 통장 사본, 계좌이체 내역서 등으로 구성된다.

참고

도약 지원사업 자문위원 등급 기준

1. 학력 및 경력기준

등급	학력 및 경력기준	1일 단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 분야의 코칭/자문을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 분야의 코칭/자문을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 분야의 코칭/자문을 수행한 자 	500,00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코칭/자문을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 분야의 코칭/자문을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 분야의 코칭/자문을 수행한 자 	400,000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사학위를 가진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코칭/자문을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 분야의 코칭/자문을 수행한 자 	300,000

2. 자격 및 경력기준

등급	학력 및 경력기준	1일 단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노무사, 기술사, 세무사, 법무사 자격증 또는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록증을 보유한 자로서, 6년 이상 코칭/자문을 수행한 자 	500,00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노무사, 기술사, 세무사, 법무사 자격증 또는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록증을 보유한 자로서, 3년 이상 코칭/자문을 수행한 자 	400,000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노무사, 기술사, 세무사, 법무사 자격증 또는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록증을 보유한 자 	300,000

3. 기타 경험 및 경력기준

등급	학력 및 경력기준	1일 단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없음 	500,00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사·노무, 세무·회계, 법률·법무, 판로·마케팅 등 관련 경력 또는 직위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고령자 대학 교수(전임강사 이상), 정부 출연 재직자(선임급 이상), 코칭/자문 해당 분야 경력보유자(경력 10년 이상), 국공립 연구기관 연구원(연구경력 5년 이상)인 자 협동조합 대표(경영책임자 포함)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최근 3년간 해당 분야의 코칭/자문을 수행한 자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유관기관 근무 경력이 5년 이상이며 최근 3년간 해당 분야의 코칭/자문을 수행한 자 	400,000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칭/자문 해당 분야 경력보유자(경력 5년 이상) 협동조합 대표(경영책임자 포함)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유관기관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00,000

※ 학위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사실확인서 등 증빙이 가능한 경력기준으로 산정

붙임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주체	비고
사업 신청	· 참여신청서 1부	협동조합	서식 01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협동조합	-
	· 최근 3년간('23~'25년 결산분) 재무제표 각 1부	협동조합	-
	· 최근 3년간('23~'25년 연말) 조합원 명부 각 1부	협동조합	-
	·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인증서 1부	협동조합	(해당 시)
사전 진단	· 사전 진단보고서 1부	거점기관	서식 02
	· 수행계획서 1부	거점기관	서식 03
협약 체결	· 사업협약서(진흥원-협동조합-거점기관) 1부	3자 간	서식 04
	· 대표자 및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각 1부	협동조합	서식 05
	· 대표자 청렴 계약이행 서약서 1부	협동조합	서식 06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조합, 기관	-
1차 사업비 (선금) 신청	· 선금 신청 공문(내부 결재시스템 활용) 1부	거점기관	-
	· 선금 지급신청서(총사업비, 선금 신청액, 계좌 정보) 1부	거점기관	서식 07
	· 선금 사용 각서 1부	거점기관	서식 08
	· 선금 사용계획서(예산항목, 세부사업, 산출내역 등) 1부	거점기관	서식 09
	· 사업자등록증 1부	거점기관	-
	· 사업비 전용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 각 1부	거점기관	-
	· 국세 납세증명서 1부(유효기간 유의)	거점기관	-
	·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유효기간 유의)	거점기관	-
	·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유효기간 유의)	거점기관	-
· 선금 이행 보증보험증권 1부	거점기관	-	
결과 보고	· 결과보고서 제출 공문 1부	거점기관	-
	· 수행 결과보고서(수당지급명세서 등 증빙 포함) 1부	거점기관	서식 10
2차 사업비 (잔금) 신청	· 잔금 신청 공문(내부 결재시스템 활용) 1부	거점기관	-
	· 국세 납세증명서 1부(유효기간 유의)	거점기관	-
	·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유효기간 유의)	거점기관	-
	·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유효기간 유의)	거점기관	-
기타	· 경영지원 수행 일지	전문가 등	-
	· 수행계획 변경 신고서(사유, 비교표 등) 1부	거점기관	서식 11
	· 사업 중도포기서 공문(포기 사유 등) 1부	협동조합	-
	· 사업 중도포기 각서 1부	협동조합	서식 12

[서식 03] 수행계획서

20〇〇년 협동조합 도약 지원사업 수행계획서				
조합명 (설립 연도)	등기부등본 기준	주 업종 (표준산업분류)	도매 및 소매업/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소재지	등기부등본 기준	조합원 수	신청일 기준 조합원 명부상 인원 기재	
협동 조합 유형	일반	<input type="checkbox"/> 사업자 <input type="checkbox"/> 다중이해관계자 <input type="checkbox"/> 직원 <input type="checkbox"/> 소비자		
	사회적	<input type="checkbox"/> 지역사업형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 고용형 <input type="checkbox"/> 위탁사업형 <input type="checkbox"/> 혼합형 <input type="checkbox"/> 기타 공익증진형		
	연합회	<input type="checkbox"/> 일반 <input type="checkbox"/> 사회적 <input type="checkbox"/> 이종		
성과지표 (KP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과정지표</i>(예시: 조합원 사업 기획 참여율, 조합원 간 거래 비중, 지역문제 발굴 참여율 등) • <i>결과지표</i>(예시: 매출 증가율, 신규 일자리 창출, 신규 거래처 및 고객 확보 수 등) • 			
실시계획 (코칭/자문)	회차 (일자)	실천 과제	참여 인력	소요 예산 (산출 내역)
	1회차 (00.00.)	•	1명 (홍길동)	300천원 (300천원×1명)
	2회차 (00.00.)	•	2명 (홍길동, 이몽룡)	700천원 (300천원×1명+ 400천원×1명)
	3회차 (00.00.)	•		
	4회차 (00.00.)	•		
	5회차 (00.00.)	•		
	총계			3명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사업비의 최소 70% 이상은 해당 조합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 * 거점기관의 직접 코칭, 연합회 등 외부 전문가 자문 포함 			
총사업비	지원금(90%)	자부담(10%)	총사업비(100%)	
	900천원	100천원	1,000천원	
담당자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참여 인력(용역사업 참여 인력 제외) 현황, 필요 사유 등</i> • <i>성과지표 수립상 고려사항, 특이사항 등</i> • <i>추진 과정상 예상되는 애로사항 등</i> 			
20 년 월 일				
작성자(거점기관): (인) 확인자(협동조합):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중				

[서식 04] 도약 지원사업 협약서

『20○○년 협동조합 도약 지원사업』 협약서

「20○○년 협동조합 도약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함)의 수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과 □□□(이하 “거점기관”이라 함), 그리고 △△△(이하 “선정조합”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3자 협약을 체결한다.

- 사업 명: 20 년 협동조합 도약 지원사업
- 협약번호:
- 협약기간: 20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 총사업비: 금 정(₩) (부가세 포함)
 - 진 흥 원 지원금: 금 정(₩) (부가세 포함)
 - 선정조합 부담금: 금 정(₩) (부가세 포함)

제1조 (목적) 본 협약의 목적은 “진흥원”이 총괄하고, “거점기관”이 관리하는 “사업”을 “선정조합”이 수행함에 있어 권리와 의무관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사업의 목표 및 내용) 사업의 목표 및 내용은 본 협약서에 의해 “선정조합”과 “거점기관”이 제출하고, 사업관리기준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함)에 따라 구성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서 승인하는 별첨의 사업신청서, 수행계획서와 같으며, “거점기관”과 “선정조합”은 본 협약서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부담금 납부 및 관리)**
- ① “선정조합”은 위원회에서 승인한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거점기관”이 관리하는 “사업” 전용 계좌에 협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입금하여야 한다.
 - ② “거점기관”은 “선정조합”의 부담금을 회계상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운영하여야 한다.
 - ③ “거점기관”은 “선정조합”의 부담금을 “진흥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수행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수행) ① “선정조합”과 “거점기관”은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선정조합”과 “거점기관”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협약 기간 내에 과업이 수행될 수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사업 수행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선정조합”과 “거점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협약의 목적상 필요하거나 정책의 변화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사업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과업을 “선정조합”과 “거점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④ “선정조합”은 “진흥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 제출 요구, 만족도조사 참여, 회의 및 성과공유회 등의 개최에 대한 협조 요청에 대하여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5조(협약의 변경과 해지) ① “진흥원”과 “선정조합”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선정조합”이 공고문 및 수행계획서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준수하지 않거나 사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 발생 또는 기타 중대한 사유 등으로 계속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선정조합”은 해당 조합의 귀책 사유로 협약이 해지된 경우, “거점기관”은 기 지급된 “선정조합”의 부담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결과보고서의 제출) “거점기관”은 2000년 00월 00일까지 “사업” 수행을 완료하고 관련 수행 결과보고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법령 준수 등) ① “선정조합”과 “거점기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가이드라인”에서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 기간 중 관계법령 및 “가이드라인”이 변경되는 경우 “선정조합”과 “거점기관”은 변경된 법령과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제8조(대외발표) “거점기관”은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실적 및 성과 등을 대외에 공개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사전에 “진흥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기획예산처 및 “진흥원”의 지원에 의한 것임을 밝혀야 한다.

제9조(자료요청) “진흥원”은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선정조합”과 “거점기관”은 “진흥원”의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0조(민·형사상 책임) “선정조합”과 “거점기관”은 본 협약서에 의한 사업비의 신청·관리와 이에 부수되어 제출하는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진실한 것임을 확인하며, 허위 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모두 진다.

제11조 (해석)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협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의의가 있을 때는 “진흥원”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 (협약의 효력) 1.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관계 법령, 그밖에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2. 본 협약서와 관련된 분쟁은 “진흥원”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3. 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진흥원”과 “선정조합”, “거점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첨부:** 1. 사업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각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
 4. 협동조합 도약 지원사업 사업관리기준 가이드라인 1부. 끝.

2000년 월 일

“진흥원”	기관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6~8층 원 장 : 정 승 국	(인)
“선정조합”	조합명 : 주 소 : 이사장 :	(인)
“거점기관”	기관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서식 05] 대표자 및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20〇〇년 협동조합 도약 지원사업 보안서약서

- 조합명:
- 직 책:
- 성 명:

상기 본인은 20 년 월 일자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〇〇년 협동조합 도약 지원사업』 사업 수행을 위해 취급하는 비밀 및 개인정보 등은 절대 누설하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또는 타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이유 불문하고 아래 제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것을 엄중히 서약합니다.

1.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2.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제60조(비밀유지) 및 제9장(벌칙)

20 년 월 일

서약인(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서약인(참여인력):	(서명 또는 인)
서약인(참여인력):	(서명 또는 인)
서약인(참여인력):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중

[서식 06] 대표자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20〇〇년 협동조합 도약 지원사업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20〇〇년 협동조합 도약 지원사업」 협약(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1. 협약(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2. 협약(계약)체결 및 협약(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나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약(계약)해지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조합명 :

이사장 :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중

[서식 07] 선금 지급신청서

「20〇〇년 협동조합 도약 지원사업 운영 용역」 선금 지급신청서

■ 계약 사항

계약번호	2000-A-0060
계약명	2000년 협동조합 도약 지원사업 운영 용역
계약금액	일금 이억칠천만 원정 (270,000,000원)
계약기간	2000.05.01.~2000.11.30.

■ 선금 신청 내역

신청금액	일금 일억팔천구백만 원정 (189,000,000원) / 계약금액의 70%
은행명	00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
예금주	주식회사 000
선금보증서	선금급 보험증권 또는 지급확약서* (선금보증금지급각서) * 「지급확약서」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28호 제35조 제1항에 따른 기관만 가능

본인은 계약조건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28호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선금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의무불이행에 따른 귀 원의 결정에 이의 없이 순응할 것을 약속하며 상기와 같이 선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08] 선금 사용 각서

「20〇〇년 협동조합 도약 지원사업 운영 용역」 선금 사용 각서

1. 선금을 받고자 할 때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28호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해당하는 증권 및 보증서 또는 약속서를 제출하겠음.
2. 위의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 및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사유발생 시점 기준,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이상으로 하겠음.
3. 보증 또는 보험의 개시일은 선금일 이전으로,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으로 정하겠으며, 계약의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귀 원의 결정에 따라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겠음.
4. 선금 수령 후 선금전액을 사용한 때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한 선금사용명세서를 귀 진흥원에 제출하겠음. (조합이 계약자인 경우 배정업체별 선금사용계획 및 사용명세서 첨부)
5.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할 것을 약속함.
6. 선금을 전액 집행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겠음.
7. 선금의 집행 관리에 대하여는 귀 원의 결정에 따르겠음.
8. 본인의 귀책사유 또는 귀 원 사정에 의하여 선금잔액(또는 전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귀 원의 반환청구(반환금액의 결정, 반환기한의 지정 및 반환조건 등)에 따르겠음.
9. 선금지급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귀 진흥원에서 본인에 대하여 일정기간 선금지급 중지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으며, 기타 선금지급에 대한 여하한 사항에 대하여도 귀 원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르겠음.

20 년 월 일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09] 선금 사용계획서

「20〇〇년 협동조합 도약 지원사업 운영 용역」 선금 사용계획서

구분	산출 내역	금액	비고	
인건비	책임연구원	7,567,456 원 × 1 명 × 7 개월 5%	2,648,609	
	연구원	5,802,624 원 × 2 명 × 7 개월 20%	16,247,347	
	연구보조원	3,878,858 원 × 2 명 × 7 개월 20%	10,860,802	
	절사 (천 단위)		-758	필요시 삭제 가능
	소 계		29,756,000	
경비	사전 자문	300,000 원 × 30 개	9,000,000	
	자문 수당	300,000 원 × 30 개 × 7 개월 × 2 회	126,000,000	
	임차료	4,000,000 원 × 1 회	4,000,000	
	사무용품	50,000 원 × 7 개월	350,000	
	국내여비	100,000 원 × 4 명 × 7 개월 × 1 회	2,800,000	
	절사 (천 단위)		-	필요시 삭제 가능
	소 계		142,150,000	
소계(공급가)	인건비 + 경비		171,906,000	
부가세	공급가액 10%		17,190,600	
총 계			189,000,000	십만원 미만 절사

※ 상기 구분은 사업 내용 및 특성에 따라 변경 가능

※ 산출 내역에 단가, 인원, 기간 등 변경 시, 금액상 자동 반영(계산 오류 시, 계산식 수정 가능)

선금 수령 후 선금 전액을 사용한 때에는 사용명세서 및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선금 사용계획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12] 사업 중도포기 각서

20〇〇년 협동조합 도약 지원사업 중도포기 각서

- 조합명 : _____
- 대표자 : _____
- 주 소 : _____
- 협약기간 : _____
- 협약금액 : _____
- 중도포기 사유 : _____

당사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20〇〇년 협동조합 도약 지원사업」을 중도포기함에 따라 전적으로 책임지며, 기납부한 자부담을 환급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또한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임을 이행 각서합니다.

20 년 월 일

조합명 :

이사장 : _____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중